

의견서

발행일 2022. 12. 26.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공고제2022-409호)
에 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이상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목차

| | |
|---------------------------------|----|
| 요약 - 방첩사령 개정령안은 군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 | 3 |
| 1. 근거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방첩사의 보안 직무 규정 | 6 |
| 2. 방첩업무 규정과도 안 맞는 방첩사의 방첩 직무 규정 | 8 |
| 3. '민간 정보 수집' 포기 못하겠다는 국방부와 방첩사 | 9 |
| 4. 최소한의 민간 통제 장치마저 무력화해 | 11 |

요약 - 방첩사령 개정령안은 군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

2022년 11월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로 조직의 이름을 다시 바꿨다.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1977.10~1990.12),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1991.01~2018.08)를 거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지사, 2018.09~2022.10)로 이름을 바꾼지 불과 4년여 만이다. 조직의 간판이 또다시 바뀌면서 군 정보기관에 대한 개혁의 퇴행이 시작됐다.

과거 보안사는, 당시 보안사령관인 전두환이 이끈 신군부가 군사반란을 일으켜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군 조직을 넘어 권력 전반을 장악하는데 핵심적 기반이 됐다. 신군부의 권력 찬탈 이후 위상이 더 높아진 보안사는 군인과 민간인들을 가리지 않고 인권 침해 행위를 자행했다. 군이 보안사를 중심으로 벌어진 어두운 현대사까지 거슬러 갈 필요도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는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과 '댓글 공작' 등을 통해 인권을 침해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기무사령관들을 비롯해 관련자들이 줄줄이 형사 처벌을 받고 있다. 2009년 쌍용자동차 투쟁,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 행동 등 대규모 시국 사건 때 어김없이 전담팀까지 꾸렸고, 불법 사찰 등을 통해 입수한 정보들을 각종 보고서로 작성해 청와대로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례로 이명박 정부 때 배득식 기무사령관은 지난 12월 13일에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2011년 3월부터 2013년 초까지 기무사 안에 공작조직인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온라인에 정치 관련 글 2만여 건을 게시토록 지시한 혐의다.

2021년 10월에는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세월호 참사 때 안산지역을 관할하던 310기무부대장인 김 전 처장은 부대원들에게 안산 가족대책위 대표의 정치적 성향, 단원고 분위기, 인천 가족대책위 요구사항 파악 등과 관련한 첩보 활동을 지시했다.

지난 10월 25일에는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과 당시 정보융합실장이던 지영관 전 참모장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대열·지영관 두 사람은 기무사 부대원이 세월호 유가족의 동정과 성향 등을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강경', '중도', '온건' 등으로 정치 성향을 분류하고 경제 형편이나 관심 사항 등까지 파악했다. 김대열 전 참모장은 경찰에서 받은 좌파·진보 단체의 집회 정보를

보수단체에 건네 '맞불 집회'를 열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지영관 전 참모장은 예비역 장성들과 단체들에게 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는 등 여론 조성 활동을 하게 하고, 이를 위해 기무사 정보사업예산 3,000만 원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12월 15일에는 기무사 소속 예비역 대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다. 2013~201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 없이 군 고위직이 다수 있는 중요 장소에 감청장비 7대를 설치하고, 수개월에 걸쳐 군인과 민간인의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28만여 건을 불법감청하는 데 관여해 이 가운데 13만여 건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긴 혐의가 적용됐다.

그 뿐 아니다. 박근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던 2017년 2월 기무사가 '계엄령 TF'를 구성해 계엄령 관련 문건을 작성해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실상 친위쿠데타를 모의한 내란 음모 혐의를 받아 온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은 2017년 12월에 미국으로 출국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의 제목 일부를 정상적 훈련 문서인 양 수정한 혐의를 받은 전 기무사 방첩정책과장에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 유예가 확정돼 유죄가 인정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 등은 1심 무죄 선고 뒤 예편해 항소심 공판을 받고 있다.

이렇듯 온갖 국기문란 불법행위로 얼룩져 온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간판을 바꾸면서 군 정보기관의 개혁이 하나씩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듯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안지사'가 '방첩사'로 조직 이름을 바꾼 것을 시작으로 속속 개혁의 퇴행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6월 안지사에 보안 및 방첩 업무 강화를 비롯해 부대의 임무와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을 맡은 '부대 혁신 TF'가 만들어졌다. 안지사의 TF 자체가 마치 기무사에서 계엄령을 검토하던 TF처럼, 2022년 3월 당시 안지사의 이상철 사령관에 의해 법령 근거도 없이,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부대 혁신 TF'가 내놓은 결과물이 바로 '방첩사'로 조직 이름을 바꾸고, 권한의 확대·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방첩사령 개정령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 TF에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이 비밀리에 자문을 해온 사실이 지난 10월에 드러났다. 안지사 '부대 혁신 TF'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박근혜 탄핵 심판 때 계엄령 검토 문건들을 정상적 훈련 문서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 유죄가 확정된 기무사 전 방첩정책과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징계 처분 항고에 대해 지난 12월 5일 국방부의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 처분

취소를 통보했다. 사법부가 혐의를 인정한 인사에 대해 국방부가 징계를 취소한 것이 방첩사 내부 구성원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한다면 조직이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전달될 것은 자명하다. 군 정보기관에 대한 개혁은 퇴행을 넘어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이다.

국방부가 지난 11월 14일 국방부공고 제2022-409호로 입법예고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방첩사령 개정령안)은 국가정보원(국정원) 관련 규정들처럼 상위 법률의 근거나 개념 정의가 대체로 불명확하다. 국방부가 방첩사령 개정령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한 "직무 범위와 대상의 구체화"보다는 직무 범위와 대상의 확대를 통한 권한의 강화, 인력 운영과 직무 수행의 효율성에만 방점이 찍혀 있다. 방첩사의 기능과 직무 범위, 권한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법제들을 법률에서부터 대통령령인 각종 규정들에 이르기까지 더 엄밀하게 갖추어야 한다.

8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방부의 방첩사령 개정령안에 대해 앞서 밝힌 취지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하고, 개정령안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한다.

1. 근거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방첩사의 보안 직무 규정

국방부는 방첩사령 개정령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제4조에 직무 범위 및 대상을 구체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실이 최근 내놓은 해명에서도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 범위를 구체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방첩사령 개정령안은 직무 범위와 대상 등 권한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상위 또는 유관 법령에 따른 근거나 정의 규정조차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개정령안 제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경우, 현행 방첩사령에서 '사이버, 암호, 전자파, 위성' 등을 추가로 포함하고,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정보작전"도 "사이버"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이나 "정보작전"과는 구분된다는 '사이버'와 관련한 개념 정의와 관계 법령도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또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임무와 어떻게 다른지도 명확하지 않다. 방첩사의 직무를 규정한 현행 방첩사령 제4조에서 주요 직무는 「[보안업무규정](#)」, 「[방첩업무 규정](#)」, 「[방위사업법](#)」등을 단서 또는 근거 법령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의 경우, '국가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일상적인 활동에 관해서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나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 개념 정의나 세부 내용들이 이미 규정되어 있는데도 상위 또는 유관 법령에 따른 명시적 근거나 정의 규정조차 전혀 전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현행 방첩사령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갖다 넣기만 했다. 이런 방식으로 방첩사의 보안 업무에 '사이버' 업무를 추가하는 것 자체로 방첩사 권한의 확대와 강화로 이어질 것은 뻔하다.

방첩사 직무 관련 단서 또는 근거 법령 중 하나인 「[방첩업무 규정 제\(2조 제1호\)](#)」에서 "방첩"을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 "외국등"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이라 정의했다. 또 [제3조 제5호](#)에서는 (외국 등의 정보활동과 방첩 관련) "업무와 관련한 국가안보 및 국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까지 방첩업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모호한 "국익" 개념에 법적 근거와 정의가 불명확한 '사이버' 보안 업무가 조합되는 문제가 생긴다. 방첩사 등 유관기관들의 자의적 해석으로 이어지면, 군 내부를 넘어 민간영역에 이르는 사찰 등 권한 오·남용 행위로 이어질 여지가 충분하다.

그나마 관련 규정으로 보이는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도 방첩사의 직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규정을 찾아 보기 어렵다. 「보안업무규정」과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자체도 법률 근거가 빈약해 포괄위임금지 등 헌법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방첩사의 '사이버 등' 보안 업무 규정이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임무를 규정한 「[사이버작전사령부령](#)」 제2조 제2호의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활동" 등과는 어떻게 다른지도 명확하지 않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과 「사이버작전사령부령」 모두에 나오는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시 각 기관 간 직무 범위와 지휘 책임 등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p align="center">현행 국군방첩사령부령 (2022.11.01. 개정 · 시행)</p> | <p align="center">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2022.11.14. 입법예고)</p> |
|---|--|
| <p>제4조(직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p>1.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보안 업무 가. ~ 다. (생략) 라.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군무원, 시설, <u>문서 및 정보통신</u> 등에 대한 보안 업무</p> | <p>제4조(직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p>1.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보안 업무 가. ~ 다. (생략) 라.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군무원, 시설, <u>문서, 정보통신, 사이버, 암호, 전자파, 위성</u> 등에 대한 보안 업무</p> |
| <p>5.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원 업무 가. <u>정보작전</u> 방호태세 및 정보전(情報戰) 지원</p> | <p>5.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원 업무 가. <u>사이버</u> 방호태세 및 정보전(情報戰) 지원</p> |

2. 방첩업무 규정과도 안 맞는 방첩사의 방첩 직무 규정

국방부는 방첩사령 개정령안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북한·외국군의 정보활동 대응"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정작 「방첩업무 규정」에서 방첩업무의 범위를 규정한 제3조 제2호의2 "외국등의 정보활동 관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는 국정원만이 수행한다는 단서 조항까지 붙어 있다. 반면, 방첩사령 개정령안에서 신설하겠다는 "북한·외국군의 정보활동 대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일컫는지, 「방첩업무 규정」상 국정원이 수행하는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대응과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직무 범위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

현행 방첩사령에서 "군 관련 방첩 업무"나 "군과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로 제한했던 규정을 그 범위가 더 포괄적이고 모호한 내용의 조문으로 개정하려는 것, 「방첩업무 규정」상 국정원의 직무 범위와 충돌할 수도 있는 내용을 굳이 담으려는 것 자체가 권한의 확대·강화를 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방부가 방첩사의 직무 수행 범위와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굳이 방첩사의 권한을 확대·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이유로 방첩사령 제4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령안에 반대한다.

| <p style="text-align: center;"><u>현행 국군방첩사령부령</u> (2022.11.01. 개정·시행)</p> | <p style="text-align: center;"><u>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u> (2022.11.14. 입법예고)</p> |
|--|--|
| <p>제4조(직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p>2.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방첩 업무</p> <p>가. 「방첩업무 규정」 중 군 관련 방첩업무</p> <p>나. 군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p> <p><신설></p> | <p>제4조(직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p>2.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방첩 업무</p> <p>가. <u>군(해외에 체류하는 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u>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p> <p>나. <u>북한·외국군의 정보활동 대응</u></p> |

3. '민간 정보 수집' 포기 못하겠다는 국방부와 방첩사

방첩사령 개정령안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는 "대간첩 작전"을 "통합방위"로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통합방위법](#)(제2조 제1호) 상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일컫는 "국가방위요소"에는 예비군이나 민방위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와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중대급 이상의 예비군 부대가 편성된 직장은 의무, 소대급 직장예비군 자원이 있는 직장은 임의)까지 포함된다(「통합방위법 제2조 제2호,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그렇지 않아도 현행 방첩사령에서 규정한 "대(對)국가전복, 대테러 (작전)"의 개념과 범위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직무 범위를 대폭 확대할 여지가 크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그런데 "대간첩 작전"을 "통합방위"로 개정할 경우, 과거 기무사처럼 방첩사도 '국가안보'를 구실로 지역 사회까지 포괄하는 직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직무 수행 범위가 넓어진 방첩사에 방첩사령 개정령안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과 같이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같은 '중앙행정기관 등'이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요청하고, 방첩사는 기관들의 요청에 응하는 방식을 통해 정보를 수집·가공해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 방첩사가 '국가안보'나 '국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민간영역까지 포괄하는 정보들을 일상적으로 수집해 보유하고 있다가 중앙행정기관, 특히 대통령실 등 주요 권력기관들이 정치적 목적과 필요에 따라 관련 정보들을 요청하면 곧바로 제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그저 기우가 아니다.

정보기관의 특성상 해당 정보와 그에 따라 작성된 자료들은 비밀 자료로 분류될 것이고, 그 가운데 불법·위법행위에 연관된 자료라면 그나마도 수사기관들의 강제 수사를 통해 겨우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들에서 보았듯,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정원과 기무사가 공개를 반대하면 정보주체인 사찰 피해자들조차도 수사를 통해 확보된 해당 자료들을 확인할 수 없어서 사법부 판결까지 거치고 나서야 겨우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상황이 이러한데, 시민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국회조차도 방첩사의 이같은 정보 수집 행위와 그에 따라 만들어지는 자료들을 제대로 감시·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최근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경우에 정보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은 법령에 근거해서 요청한 경우에만 협조가 가능하다는 제한적 조항으로서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오히려 국방부와 방첩사가 지금도 이같은 업무를 임의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계 법령들을 만들더라도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방부와 같이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 한해 협조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자면, 방첩사가 임의적으로 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단서 규정이나 관련 처벌 또는 징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공기관들의 '사실 확인 요청' 관련 세부 내용과 현황 등을 민감한 개인 정보들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관련해 정보 수집과 자료 생산 단계부터 강도 높게 관리·통제하고 관련 정보와 자료들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공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률과 규정들부터 촘촘하게 갖춰져야 한다.

이같은 법률적 통제 장치들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첩사령에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은 권한 오·남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국방부와 방첩사는 물론이고, 권력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이나 공직사회를 넘어 민간영역까지 사찰을 해서라도 각종 정보를 모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첩사령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개정하고 마목을 신설하는 개정령안에 반대한다.

| <u>현행 국군방첩사령부령</u> (2022.11.01. 개정·시행) | <u>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u> (2022.11.14. 입법예고) |
|--|--|
| 제4조(직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3.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 업무 나. 대(對)국가전복, 대테러 및 <u>대간첩 작전</u> 에 관한 정보 | 제4조(직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3.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 업무 나. 대(對)국가전복, 대테러 및 <u>통합방위</u> 에 관한 정보 |
| <신설> | 마. 「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

4. 최소한의 민간 통제 장치마저 무력화해

현행 [방첩사령 제9조 제2항](#)에서는 "사령부에 두는 군인의 비율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10분의 7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군 정보기관에 대해 민간에 의한 최소한의 감시와 통제 장치로 둔 조항이다. 그러나 개정령안은 제10조에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행 방첩사령 제9조 제2항의 사실상 폐지를 뜻한다. 앞서도 강조했듯, 국방부와 방첩사가 권한을 확대·강화하면서도 민간에 의한 최소한의 통제조치 받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개정령안에서 이 규정을 사실상 폐지하는 안을 담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방첩사령 제9조를 개정해 제10조로 만드는 개정령안에 반대하며, 방첩사의 조직과 직무 수행에 대한 민간의 통제 장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 현행 국군방첩사령부령 (2022.11.01. 개정·시행) |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2022.11.14. 입법예고) |
|---|--|
| <p><u>제9조(정원) ①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u></p> <p><u>② 사령부에 두는 군인의 비율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10분의 7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율을 산정할 때 병(兵)의 정원은 제외한다.</u></p> | <p><u>제10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u></p> <p><u>다만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u></p> |

국방부 대변인실은 방첩사령 개정령안과 관련해 최근에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직무 범위를 구체화 하기 위한 것이며, 3불 원칙(정치관여 행위, 직무를 벗어난 민간사찰, 권한오남용 금지)은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른바 '3불 원칙'이 규정된 현행 [방첩사령 제3조](#) 내용을 선언적으로 되짚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공직자라면 누구나 마땅히 지켜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방첩사는 굳이 방첩사령에 이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이유부터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국방부가 밝힌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직무 범위의 구체화"는 국회의

민주적 통제에 따라 헌법에 근거한 상위 법률부터 엄밀히 세운 뒤라야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 국방부는 입법 공백을 악용해 잘못된 개정령안의 시행을 강행하는 사례를 남겨선 안 된다. 방첩사령 개정령안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국군방첩사령부령 (2022.11.01. 개정 · 시행)

제3조(기본원칙)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 등(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2. 이 영에서 정하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기관 출입 등의 모든 행위
3. 군인등에 대하여 직무 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용 · 남용하는 모든 행위
4. 이 영에 따른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 · 적용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모든 행위

의견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공고제**2022-409**호)에 대한 의견서

발행일 2022. 12. 26.

발행처 국정원감시네트워크 · 군인권센터
담당

-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 02-723-5302 tsc@pspd.org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